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례집



감 사 관
[조사담당관]

목 차

I. 청탁금지법 소개	3
1. 제정취지	4
2. 주요내용	5
3. 현행법령	10
II. 상황별 사례 및 판단기준	37
1. 부정청탁	38
2. [금품] 인사이동 · 명절 등 선물	43
3. [금품] 경조사비	49
4. [금품] 음식물	56
5. [금품] 퇴직(예정자)	59
6. [금품] 의회	66
7. [금품] 학교 · 어린이집	70
8. [금품] 기타	77
9. 외부강의등	90
III. 신고방법 및 처리기준	97
1. 부정청탁	98
2. 금품수수	101
3. 외부강의	105

I . 청탁금지법 소개

1. 부정청탁
2. 금품수수
3. 외부강의

I. 청탁금지법 소개

1 제정취지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받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므로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들을 보호
- 공직자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들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들을 면책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2조 제2호 가목)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정무직)에 해당함.
- 임기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함.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 행정기관 무기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제2조 제2호 나목)

가.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원

-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 모두 포함)를 의미함.

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직원

-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적용 대상에 해당함.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직유관단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3. 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2조 제2호 다목)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도 학교 직원에 포함됨.

- ◆ **학교의 장** : 총장, 학장, 교장, 원장
- ◆ **교원** :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
-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함.

4. 학교법인의 임직원 (제2조 제2호 다목)

-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이사, 감사(상임, 비상임 모두 포함)를 의미함.
- 직원은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함.

※학교(법인)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학교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정리			
공공기관	적용대상자	비적용대상자	
학교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운동부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중·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사 · 운동부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사 · 자원봉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5.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2조 제2호 라목)

가. 언론사의 대표자

-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함.

나. 언론사의 임직원

-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구분되고, 상임 및 비상임 임원을 포함함.
-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취재·보도·편집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지원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인턴기자처럼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시간근로자,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포함함.

※언론사와 용역(도급)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받는 만평작가·기고 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 다만,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경우 언론 활동 종사자만 포함
(예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이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함.

6. 기타

가.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
-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으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등을 제재함.

나.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제공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대상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 하지 않은 이상 양벌 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함.

다. 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 제1항)

- 공무수행사인은 법 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만 적용함.

- ◆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함.
- ◆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근거한 경우뿐 아니라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함.
- ◆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함.

□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금품등 가액 (시행령 제17조)

구 분		가액 범위
가액 범위*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에는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됨		
선물의 범위		상품권, 기프트콘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등 신고

구 분		사례금 상한액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의원 포함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최대 40만 원, 최대 60만 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 원 (사례금 총액 제한없음)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 원 (사례금 총액 제한없음)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함.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외부강의등 구분

외부강의등 해당	외부강의등 미해당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강의·강연	법령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시험문제 출제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공청회·간담회 등의 좌장	언론 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출연
온라인 동영상 강의	1:1이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자문·면접
신문·잡지에의 기고	방송사 아나운서의 단순 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개정 2021. 4. 20., 2021. 12. 7.>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개정 2019. 4. 16., 2021. 12. 7.>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

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7.>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8581호, 2021. 1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89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들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 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

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2020. 5. 26.>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7.>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6. 7.>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소속기관장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부칙 <제32689호, 2022. 6. 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5.>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1. 12. 7. 일부개정, '22. 6. 8. 시행

□ 개정 목적

-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내용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습생 등 모집·선발(제3호) ■ 장학생 선발(제5호) ■ 논문심사·학위수여(제10호) ■ 인정(認定) 업무(제12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제14호)
신고자 보호· 보상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법 제1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금 지급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
	이행강제금 부과 (법 제1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신·구 조문 대비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4. 20. 타법개정, 2021. 10. 21.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12. 7. 일부개정, 2022. 6. 8. 시행]
<p>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p> <p>1. 2. (생략)</p> <p>3. <u>채용·승진·전보</u>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p> <p>4. (생략)</p> <p>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u>우수자 선발</u>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p> <p>6. ~ 9. (생략)</p> <p>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u>수행평가</u>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p> <p>11. (생략)</p> <p>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u>평가·판정</u>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u>평가 또는 판정하게</u>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p>	<p>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모집·선발·채용</u>----- ----- -----</p> <p>4. (현행과 같음)</p> <p>5. ----- -----<u>우수자·장학생</u>----- ----- -----</p> <p>6. ~ 9. (현행과 같음)</p> <p>10. -----<u>수행평가·논문 심사·학위수여</u>----- -----</p> <p>11. (현행과 같음)</p> <p>12. ----- <u>평가·판정·인정</u> -----<u>평가, 판정 또는 인정 하게</u>-----</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4. 20. 타법개정, 2021. 10. 21.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12. 7. 일부개정, 2022. 6. 8. 시행]
<p>13. (생략)</p> <p>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u>화해</u>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p> <p>15.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13. (현행과 같음)</p> <p>14. -----<u>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보호</u>-----</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같음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u></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4. 20. 타법개정, 2021. 10. 21.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12. 7. 일부개정, 2022. 6. 8. 시행]
<p>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p> <p>⑤·⑥ (생략)</p> <p><신설></p>	<p>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 ---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u>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u>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p>「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4. 20. 타법개정, 2021. 10. 21. 시행]</p>	<p>「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12. 7. 일부개정, 2022. 6. 8. 시행]</p>
<p>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p> <p><신 설></p> <p>제23조(과태료 부과) ① (생 략)</p> <p>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p>	<p>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p> <p>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 ----- ----- -----</p> <p>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4. 20. 타법개정, 2021. 10. 21. 시행]</p>	<p>「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12. 7. 일부개정, 2022. 6. 8. 시행]</p>
<p><u>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u></p> <p>③ ~ ⑦ (생략)</p>	<p>1. <u>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u></p> <p>2. <u>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Ⅱ. 상황별 사례 및 판단기준

1. 부정청탁
2. [금품] 인사이동·명절 등 선물
3. [금품] 경조사비
4. [금품] 음식물
5. [금품] 퇴직(예정)자
6. [금품] 의회
7. [금품] 학교·어린이집
8. [금품] 기타
9. 외부강의등

※ 본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상황별 사례 및 판단기준

1 부정청탁

사례 1

Q. ○○○도 ★★★★★과장 A는 아들이 신청한 폐수배출시설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해달라고 담당 주무관 B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그러나 B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되는지?

A. 제재 대상이 됨.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해설

-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이를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 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례 2

Q.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시청 담당 공무원 B에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 후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시 공무원 C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으나 C는 이를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 경우 A는 청탁 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한 것인지?

A.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설

-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3자에게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의 부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3

Q. 공무원이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본인의 승진 및 희망부서 관련 인사 고충을 전달하고 상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하지 않음. 다만 단순한 인사 관련 상담을 넘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을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함.

해설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직자등의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함.
-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가 부정청탁 거절·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면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제6조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2022. 3. 28.)

사 건 2021과 520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평가원 인사위원회가 2020. 12. 21.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반자는 ○○평가원 B로서 2020. 12. 18. 위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본부장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승진 대상자인 C를 배려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전주지방법원 결정 (2021. 3. 17.)

사 건 2020과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B군 행정복지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2019. 1.경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 위원인 B군 사회복지과장 C등에게 전화를 하여 친척이니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A의 친척 조카인 D의 B군 자원봉사센터의 1년 계약직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4

Q. 지방의원·지자체장 등이 지역민 또는 특정 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 되도록 예산편성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할 수 있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을 할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함.

해설

- 단,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는 청탁 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금품] 인사이동·명절 등 선물

사례 1

Q. 경기도 공무원 A가 승진하였다. 경기도 공무원 B,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산하기관 직원 C와 시·군 공무원 D는 각각 A에게 화분을 선물할 수 있는지?

A. 가능함. 같은 기관 내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B는 A에게 1회 100만 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C와 D는 A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면 10만 원 이내의 화분을 선물할 수 있음.

해설

-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가액 범위 내의 화분 등 선물은 제공할 수 있음.

< 선물 종류별 가액 범위 >

- 화분, 난, 떡 등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0만 원 이하 가능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외 선물* ⇒ 5만 원 이하 가능

*금전, 유가증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1]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조사·감사·지도·감독·예산·상훈·평가 등 현안이 있어 금품 등 수수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교·의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금액 상관없이 제공 불가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7조 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례 2

Q. A는 언론사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언론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A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기자 B가 임용 축하 선물로 A에게 3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A. 받을 수 없음. 미션이는 언론사와 접촉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자 B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면 5만 원 이내 선물은 받을 수 있지만 기프트콘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음.

해설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은 받을 수 있음.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는 금전, 유가증권 등이 제외되며, 기프트콘, 상품권, 입장권, 회원권, 숙박권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받을 수 없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3

Q. 직원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명절선물을 줄 수 있는지?

A.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면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줄 수 있음.

해설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3만 원)과 선물(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됨.
- 명절에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 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20만 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과 선물 각각의 가액 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인사 평가 등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시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4

Q. ㄱㄱ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장이 ㄱㄱ도 환경 관련 부서장에게 명절선물로 15만 원 상당의 홍삼을 보냈는데 받을 수 있는지?

A. 받을 수 없음.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보조사업자인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예외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해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면 가액 범위 내 선물은 받을 수 있음.
- 단,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조사, 감사, 지도, 감독, 예산, 상훈, 평가 등)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5

Q. A는 본인의 목숨을 구해 준 119 구급대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1만 원 상당의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A.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라면 제공할 수 있음.

해설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은 받을 수 있음.
- 다만,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①사안의 음료수 제공이 응급 이송 등 업무를 담당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고(목적의 정당성) ②해당 음료를 제공하는 데 강압성, 강제성이 없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르며(절차의 투명성) ③현장 활동 대원들에게 제공되어 적정히 사용되는 등(사용의 적정성)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금품 제공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8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3

[금품] 경조사비

사례 1

Q.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경조사비를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A.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5만 원(축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줄 수 있음.

해설

- 감사·인사·평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료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까지 경조사비를 줄 수 있음.
- 공직자등과 동료 직원이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2

Q. 부친상을 당한 하급 공직자에게 상급 공직자가 업무추진비로 화환을 보내고, 사비로 따로 경조사비를 줄 수 있는지?

A. 줄 수 있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가능함.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해당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액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음.
-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같은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어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사례 3

Q. 근무평정 기간에 실·국장이 모친상을 당하였다. 해당 실·국 소속 주무관이 조의금을 낼 수 있는지?

A. 낼 수 있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라도 5만 원 이내로 조의금을 낼 수 있음.

해설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됨.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 범위 내라도 금품등 제공을 허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회환·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

사례 4

Q. 친목회 구성원인 공직자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친목회에서 회칙에 따라 120만 원의 축의금을 줄 수 있는지?

A. 회칙에 따라 모임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해당한다면 가능함.

해설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 ② 내부적 의사결정 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회칙 없이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가, 구성원에게 축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 회칙을 정하고 이전에 적립해둔 회비를 회칙에 따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사례 5

Q.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의 결혼식에 가족 구성원 3명과 함께 방문하고자 하는데 식대를 고려하여 축의금을 5만 원 이상 낼 수 있는지?

A. 낼 수 없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범위 내 경조사비만 허용되므로 가족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축의금은 5만 원까지만 줄 수 있음.

해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허용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사례 6

Q. 공무원 A는 결혼식이 끝난 뒤 직무관련자가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가액기준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5만 원)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면 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축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해설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만약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 만약 제공자에게 가액기준 초과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수수한 경조사비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됨.

※제공자는 수수자의 금품등 반환(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가액기준 초과 부분을 포함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받게 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청탁금지법 제9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 제8조] 대구지방법원 결정 (2021. 3. 25.)

사 건

2020과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5. 24. ○○시 B장(代) C의 자녀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금품] 음식물

사례 1

Q. 직무 관련 업체 직원이 청사 앞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두고 공직자등에게 연락 하여 공직자등이 해당 식당에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직무 관련 업체 직원은 같이 식사하지 않음.

A. 허용되지 않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함.

해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2

Q. ◆◆도 팀장 A와 ◆◆도 산하 공공기관 팀장 B, 팀원 C 총 3명이 함께 식사하고 1인당 5만 원이 나왔는데, B가 11만 원[(3만 원x3명)+2만 원]을 내고, A와 C가 각자 2만 원을 냈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A. 허용됨. B는 직무관련자인 A에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인 3만 원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됨.

※B는 C의 상급자이므로 B는 C에게 금액 제한 없이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음.

해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3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5천 원 상당의 커피도 접대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위반임.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며 총 수수한 금액이 음식물 가액 범위 3만 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함.

해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함.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5

[금품] 퇴직(예정)자

사례 1

Q. 퇴직한 공직자에게 전 직장 동료들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 200만 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A. 가능함. 퇴직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음.

해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퇴직 공직자가 교수로 임용되거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등 다시 공직자 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공직자에게 금액 제한 없이 전별금을 제공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1조

-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은 퇴직한 이후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저는 퇴직 이후 공공기관에 새로 취직해서 다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이 되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이후에 다시 공직자등이 되었다면 퇴직 전과 같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법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p>“저는 퇴직 이후 사기업에 취직한 민간인*이에요.” *공무수행사인도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 법 제23조 제2항)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 법 제23조 제3항) ○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 법 제8조 제5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련 :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 법 제8조 제5항 위반으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관련 :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p>“저는 공직자등이 아니고, 제 남편은 공직자등이에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가 공직자등인 남편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았는데, 남편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제재를 받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자에게 금품등을 즉시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엔 면제 →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되는 금품등) 법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공직자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련 :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되는 금품등) 법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관련 :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2호)

사례 2

Q. A는 □□도 소속 과장으로서 공로 연수를 받는 중이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20명이 돈을 모아 1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직원 20명은 모두 과장보다 직급이 낮음.

A. 받을 수 없음. 공로 연수를 받는 중이라면 아직 공직자등의 지위에 있으므로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위 사례의 경우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음.

해설

-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자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내의 선물은 받을 수 있음.
-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동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합산 금액으로 제재 수준 결정됨.
 - (합산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대상
 - (합산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3

Q. 하반기에 퇴직 예정인 부서장에게 직원들이 기념패와 축전을 줄 수 있는지?

A. 줄 수 있음. 제공자와 수수자 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가액의 기념패와 축전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됨.

해설

○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고가가 아닌 적절한 수준의 '기념패 또는 공로패'와 '축전'은 사회상규상 허용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 제8조] 대전지방법원 결정 (2021. 4. 30.)

사 건

2021과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8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2. 19. 직원인 팀장 B를 통하여 C 실태점검(전기, 기계, 통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D에게 금 24K(3.75g)(시가 242,347원)이 전면에도장된 공로패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4

Q. 직원들이 돈을 모아 퇴직 예정인 동료 공직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로 줄 수 있는지?

A. 줄 수 있음.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0만 원 이하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로 줄 수 있음.

해설

- 동료 직원 간 인사, 감사, 평가 등 직무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음. (전별금 등 금전도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상·하급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우며 사안별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5

Q. 친목회에서 회비로 퇴직 예정인 공직자에게 전별금(200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어도 줄 수 있는지?

A.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다면 200만 원의 전별금은 줄 수 없음.

해설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허용됨.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 ② 내부적 의사결정 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회칙 없이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가, 구성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 회칙을 정하고 이전에 적립해둔 회비를 회칙에 따라 제공할 수도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금품] 의회

사례 1

Q. ★★도의회 상임위원회 연찬회 개최 시 해당 실·국장이 참석하여 업무추진비로 식사비, 숙박비 등 연찬회 운영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협찬할 수 있는지?

A. 협찬할 수 없음. 연찬회 참석자인 실·국장이 연찬회 운영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협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함.

해설

- 제공자와 수수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됨.
- 위 사례의 경우 실·국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실·국에서 연찬회 비용을 부담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사례 2

Q. □□도 소속 공무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소속 도의원에게 식사를 접대할 수 있는지?

A. 제공 시기, 의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

해설

- 직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혹은 예산·결산 심사 진행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됨.

*도정질문,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 비회기 중이거나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시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내로 함께 식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3

Q. ○○도의회 의원이 책을 출간하였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도 공무원이 책을 구매할 수 있는지?

A. 구매할 수 있음. 단, 책 가격 이상의 현금을 줄 수는 없음.

해설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서를 정가에 구매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다만, 도서를 정가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등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 또는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사례 4

Q. 소관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을 때 해당 실·국장이 상임위원장과 상임 위원들에게 축하 화분을 선물할 수 있는지?

A.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함.

해설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선물(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는 10만 원)은 가능함.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7

[금품] 학교 · 어린이집

사례 1

Q.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는지?

A. 가능함.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해설

- 학생과 담임교사, 학생과 교과 담당 교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높아 금품등을 일절 제공할 수 없으나,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등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2

Q.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에 올라갔다. 5학년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과 편지를 드릴 수 있는지?

A. 가능함. 이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내의 선물과 편지를 드릴 수 있음. 다만, 진급 이후에도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 담당한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릴 수 없음.

해설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는 10만 원)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3

Q.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드릴 수 있는지?

A. 불가능함.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을 담당하므로 사교·의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없음.

해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
-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 담당하므로 직무 관련성이 높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결혼 축하의 의미로 학생들이 식당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4

Q. 자녀가 한 법인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와 간식을 드려도 되는지?

A. 가능함.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음료와 간식 등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음.

해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례 5

Q.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님께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접대할 수 있는지?

A. 불가능함.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과 심사위원인 교수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밀접하여 금품등을 일절 제공할 수 없음.

해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다만, 위와 같이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사례 6

Q. 대학원 졸업생인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지도교수님께 5만 원 이내로 감사 선물을 드릴 수 있는지?

A. 가능함. 졸업생과 교수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탁 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선물을 드릴 수 있음.

해설

- 제공자와 수수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 제8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2020. 5. 8.)

사 건 2019과 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석사 재학 중)으로 2019. 5. 13.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에게 금품(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반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교수 ○○○이 운영하는 ○○○○○○○는 위 학과의 재학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점, 이 사건 당일은 ○○○ 교수에 대한 스승의 날 행사였던 점,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건 당일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21명 중 위반자를 비롯한 12명이 ○○○이 지도교수거나 지도를 받을 예정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

Q. ♠♠도 소속 주무관이 백화점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400만 원 상당의 TV에 당첨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

A. 받을 수 있음.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상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함.

해설

-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응모하는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사례 2

Q. 한 기업에서 공무원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특별 할인을 적용해 준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위반 아님. 기업이 일반인과 공직자등 간에 차별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해설

☞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 (국민권익위원회, 2020. 8. 24)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법 제8조 제2항)
-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품등을 받을 수 있음.

※ **할인 혜택 제공** 관련 예외 사유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 **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예외 사유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 할인 혜택 제공 관련 판단기준 〉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 아닌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로서,
 - 협약이라는 **권원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약체결의 투명성, 직무관계의 밀접성, 혜택 제공의 보편성, 혜택범위의 적정성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협약기관 간 **밀접한 직무 관계가 있거나**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혹은 할인 혜택 제공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음.**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함.
 -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 등과의 직무 관련성의 내용,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일반인과 공직자등 간에 **차별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로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할 수 있음.
- 사회상규는 불확정개념으로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표면상 할인 혜택을 특정 직종 공직자등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사례** 혹은 다른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판단기준 〉

□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장학금 제공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학칙 등에서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하지 않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등의 가족(자녀 등)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 위 특별한 사정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 인허가, 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하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음.
- 결국, 공직자등의 가족(자녀 등)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혜택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됨.

공직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자녀 명의 통장에 장학금 명목으로 299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수수·제공자 관계 및 자녀가 11살의 미성년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원 전부를 공직자가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342)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제8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3

Q. 공무원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10만 원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할인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위반에 해당하며 할인받은 금액이 5만 원 이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해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됨.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할인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할인금액이 5만 원 이내여도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 제8조]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21. 7. 7.)

사 건 2020과 117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되고(제8조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5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과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공무원인 B에게 2019. 4. 11.과 2019. 7. 21. 2회에 걸쳐 위반자가 대표자로 있는 C가 보유한 D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175,000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할인받도록 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시 공무원인 B, E, F가 포함된 G동호회의 회원으로 2019. 7. 5.부터 2019. 7. 6.까지 골프모임에 참석하여 위 직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 비용으로 56,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합계 231,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4

Q. ㉠㉠국 ㉠㉠부서 상급자(서기관)와 ㉡㉡국 ㉡㉡부서 하급자(사무관)를 동료로 보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A. 그러함. 공공기관 내 하급자의 직속 과·국 이외에 다른 과·국의 상급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해설

-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직속 부서(과, 국)가 아닌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 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음.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5

Q.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격려품으로 간식 등을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지?

A. 받을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내 선물은 가능함.

해설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

※단, 금전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례 6

Q. 청사 내에 기자실을 운영하면서 특정 언론사를 위해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특정 언론사에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해설

- 공공기관이 합리적 사유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청사 출입 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 이 경우 출입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좌석을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공공기관에서 특정 언론사의 좌석을 지정해주는 등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7

Q. 간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단체를 방문하였을 때 해당 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준다면 받아도 되는지?

A.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음.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는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함.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여부,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에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대한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 통념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사례 8

Q. ▣▣도 소속 공무원이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주최 측에서 준비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아도 되는지?

A. 가능함.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음.

해설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 여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 초청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 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적정한지 개별 사안 별로 판단함.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사례 9

Q. ♣♣도 금고로 지정되어있는 은행에서 ♣♣도민 체육대회 행운권 추첨을 위한 경품을 협찬해준다고 하는데 지원받아도 되는지?

A. 받을 수 없음.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함.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1)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예: 기부금품법에 따라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접수 가능), 2)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 협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외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국민권익위원회, 2019. 7.)

①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상호 간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것.

②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 관계(반대급부)가 있을 것.

※ 행사 전단지 등에 금품 제공자의 성명·단체명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히 금품 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제8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10

Q. 공직자등이 본인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주제 관련 설문 조사에 응답한 뒤 사례금으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음.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음.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권원의 존재 여부, 권원의 정당성(제공 목적, 동기, 경위, 직무내용, 특성, 수수자와 제공자 간 관계, 관계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다만 해당 사례금 지급이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면 제공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9

외부강의등

사례 1

Q. ♡♡도 ○○부서 팀장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도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하고 나서 강의 종료일로부터 11일이 지나고 나서야 신고하였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위반 아님.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 신고하면 됨.

해설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신고 대상 아님.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사례 2

Q. ♡♡도 ○○부서 팀장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의 외부강의등을 1일 3시간 동안 한 경우 사례금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A.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더라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기준 상한액의 150/100을 초과하지 못함.

※산출 근거(60만 원): 1시간 기준 사례금 상한액(40만 원) + 1시간 초과(40만 원x50/100)

해설

-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없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3

Q. ♡♡도 ○○부서 팀장이 1시간 동안 외부강의등을 하고 사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도 초과 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법 위반에 해당함. 공무원의 경우 1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았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해설

○ 공직자등은 초과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장에게 초과 사례금 반환 통지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 장에게 알려야 함.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5항

·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 제10조] 인천지방법원 결정 (2022. 3. 17.)

사 건

2021과 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관 소속 직원으로서 2020. 2. 21. 사단법인 B로부터 요청 받은 외부강의를 수행함에 있어 총 100만 원의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3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4

Q. ♡♡도 소속 주무관 A는 육아휴직 기간 중 ♡♡도 공직유관단체의 요청을 받아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하였다. 이 경우에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해야 함. 육아휴직 중일지라도 공직자 신분이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해설

○ 휴직 중인 공직자도 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신고해야 하며,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및 반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인사과에 별도로 문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사례 5

Q. ♡♡도 ○○부서 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이 많아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님.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등 횟수 및 시간이 제한되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해설

- 청탁금지법에 연간 외부강의등의 횟수와 연간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다만,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에 파견된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외부강의등을 여러 번 한 경우 사례금 지급 기관, 강의 일자, 강의 대상, 강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1회의 강의로 판단하여 각각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사례금 지급 기관	강의 일자	강의 대상	강의내용(주제)	사례금 수수 가능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X
같음	같음	같음	다름	O
같음	같음	다름	같음	O
같음	다름	같은 다르든 상관없음		O
다름	같은 다르든 상관없음			O

관련 법령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7항

-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례 6

Q. ♡♡도 ○○부서 팀장이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형태,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형태는 외부 강의등에 해당함.

해설

- 다만,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것과 같이 단순히 행사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행위는 다수에게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신고방법 및 처리기준

1. 부정청탁
2. 금품수수
3. 외부강의

Ⅲ. 신고방법 및 처리기준

1 부정청탁

□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의무

- 대부분의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의 속성상 쉽게 거절하지 못함.
 - 부정청탁의 대부분이 공직자등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또한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공직자등에게 거절 의무를 부과함.
 -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부정청탁 신고 의무 및 신고 방법

- 공직자등이 **‘최초의’**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법 제7조 제1항)
 - 그럼에도 **‘동일한 부정청탁’** 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법 제7조 제2항)
 - 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신고 절차를 따른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공직자등은 아래 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함.
 - 신고자의 인적 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 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부정청탁의 일시·장소·내용,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징계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면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를 처분해야 함.
 -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 대상에는 해당함.

□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함.
 - 소속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및 민간인에 대해서도 함께 통보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소속기관의 장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함.

| 부정청탁 관련 제재 |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부정 청탁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일 경우 징계 가능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부과 취소 등

- 과태료 부과 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함.

-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관련: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함.

- 과태료 부과 의뢰 이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징계부가금 부과 사실을 통보함.

2

금품수수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 의무 및 신고 방법

-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아래 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자의 인적 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 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함.
- 또한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다만,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함.
 - ①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신고 및 반환(인도) 시기

○ ‘지체 없이’ 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를 의미함.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또는 인도하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필요적 면제)

-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는 신고 또는 반환 또는 인도를 ‘지체 없이’ 하였는가임.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하였다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임의적 감면)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징계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면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를 처분해야 함.

-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임.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 및 반환 또는 인도하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직자등이 신고 절차를 따랐을 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함.
- 소속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및 민간인에 대해서도 함께 통보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함.

┆ 금품등 수수 관련 제재 ┆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금품 등 수수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 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자신의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 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 의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금품 등 수수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 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 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 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과태료 부과 취소 등

○ 과태료 부과 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함.

-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관련: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단서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함.

- 과태료 부과 의뢰 이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징계부가금 부과 사실을 통보함.

3

외부강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함.
- 위 내용에 따라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소속기관 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 사례금을 받았다면 이를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구 분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 원	100만 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 원 ※1시간 상한액의 (150/100)% 초과 불가	제한 없음

○ 초과 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하지 않았다면 징계 대상에 해당함.

□ 징계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면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를 처분해야 함.

-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임.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하였어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랐을 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과태료 부과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받고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참고 1

신고서 (자진 신고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참고 2

신고서 (제3자 신고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서(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법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